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국회 동의 의무화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5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에 대한 주무기관 장의 요청 및 지분 매각·인력감축 시 국회 동의 의무화(안 제14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4.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능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관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합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구조조정, 자산매각 및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거나 보편적 공공서비스 가치를 훼손 또는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사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정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인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기능조정의 형식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

력감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에 대한 주무기관 장의 요청 및 지분매각·인력감축 시 국회 동의 의무화(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신설>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매각이나 정부 소유 주식의 일부·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축 등을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현행법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조정 중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개정안의 내용 중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에 있어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계획 수립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경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주무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 재정이나 공공기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기능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²⁾, 유사한 업무를 각기 다른 주무부처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³⁾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적인 기능조정 방안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경영 일선의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는 현행 규정의 연혁을 살펴볼

2)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의 역할을 주무부처로 이관시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나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3) 일례로 하천정비 공사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이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 중임

필요가 있음.

국회 상임위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계획을 보고하는 규정(현행 법 제14조제1항)은 2016년 12월에 개정(2017. 6. 시행)되었는데 개정 논의 당시에 민영화·기능조정 추진 시에 국회 상임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민영화·기능조정 계획이 수립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법안 문구가 정리된 바 있음⁴⁾.

조문 개정(2017. 6) 후 민영화 또는 기능조정 사례로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2021. 9)⁵⁾으로 통폐합된 사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2018. 12)⁶⁾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적은 없었고⁷⁾,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기관 통폐합이 결정되었음.

개정안의 경우, 안 제14조제2항과 같이 정부 보유 지분 매각이나 인력감축 등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게 되면, 민영화 또는 지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2016. 7. 26. 발의)

자료: 제346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16년11월10일)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지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새로 제정되었음.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신설되면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흡수되었음.

7) 각 부처 주도로 추진된 기관 통폐합인 경우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조정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바는 없다는 입장임

매각 등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력이 큰 중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져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16년 개정 논의 당시 민영화 등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우려사항⁸⁾⁹⁾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영화 등 기능조정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정태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557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염용수 위원 저도 정부 입장에 공감을 하는데, 민영화나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신속하게 소신 있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조정이나 민영화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좋은 말씀들인데, 민영화 주도는 정부 몫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주셨는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온갖 얘기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조정을 해보세요...(이하 생략)

자료: 제346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16년11월10일)

9)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기관통폐합 시 국회에서 기존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거나 통합기관 근거법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그 외의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견 반영은 정부 정책입안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u>장과 협의한 후</u>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 ----- <u>장이 요청한 경우</u> ----- ----- ----- ----- ----- 수립할 수 있다.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매각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문의처

02)6788-5157